

예미지 퍼스트포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귀하의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이 사전서류 검수기간을 통해 자격확인을 진행하오니, 기간 내 반드시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예비 당첨자 서류 제출 예약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을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당첨자			예비 당첨자		
서류제출 예약기간	4월 27일(화) ~ 5월 1일(토)	홈페이지 예약	서류제출 예약기간	5월 16일(일) ~ 5월 18일(화)	홈페이지 예약
서류제출 기간	5월 2일(일) ~ 5월 7일(금)	건본주택 (10:00 ~ 16:00)	서류제출 기간	5월 19일(수) ~ 5월 21일(금)	건본주택 (10:00 ~ 16:00)

■ 공통사항 및 유의사항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9)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상기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상세"로 발급 되어야 함
- ※ 사전 서류 검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계약 시 구비서류로 같음하며,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서류	발급기준	체크사항
기본서류 (필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주택공급신청용(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본인에 한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능
	신분증 사본	본인 본인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신규발급분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발급일, 주소변동사항, 전입일, 주민번호, 세대구성 사유, 배우자 확인 등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본인 건본주택 비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신혼 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및 본인, 배우자에 관한사항과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확인,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도 제출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가구원 전원의 소득 입증자료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병원직인 필) 임신의 경우(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확인서 불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양식]건본주택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당사 양식]건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 및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 본인 확인)
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당첨 소명각서	[당사 양식]건본주택 비치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검단신도시 AB3-2블록 **에미지 퍼스트포레** 신혼부부 소득서류 관련 안내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기준표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선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제출서류

- 전년도 소득증빙이 불가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으로 대체합니다.
 - 서류접수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후(현)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소득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